

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6. 3. 8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6. 3. 9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6. 3. 17(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- 마. 의안번호 : 제2006-7호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종 연)

가. 제안이유

- 재난분야에 민간참여를 극대화하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이 '05. 8. 4 전면개정·공포됨에 따라 기존 수방단을 폐지하고, 「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」을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 - 단장 1인,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
 - 단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개인·단체·기업체·기관 등으로 구성
 -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·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
- 임원의 임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 -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
 -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와 회의기록, 행정업무 등을 담당
 - 단장, 간사, 대표의 임기는 3년(연임 가능)

-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 -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·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·조정
 - 협의회는 단장, 민간단체 대표, 읍·면 대표 등으로 구성
- 방재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 - 재난 사전 예방활동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련 전반 지원활동
-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방재단의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,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 종 목)

-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자연재난이 대형화되고 국지성 호우 등 그 발생 및 규모의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태의 재난이 빈발하고 있어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, 행정기관의 역량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
- 지역 내 지형과 수리(水理)에 밝고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가진 지역주민, 민간단체 등 각 분야의 공동협력체를 구성하여 재해의 예방 및 경감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는 선진형 방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.
- 이와 관련,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이 2005. 7. 27자로 전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임.
-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, 방재단의 임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금지사항,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, 그리고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

- 특히 방재단원의 교육과 훈련을 연2회 8시간과, 연1회 4시간으로 의무화(안 제12조, 안 제13조)한 것은 방재단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기대됨.
-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고,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「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」에 근거하여 우리 군의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으로
- 법령으로서의 체계성을 갖추고 규범화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조례와의 관련성에 있어 기능상 유사하고 중복성이 내재된 「거창군 수방단 운영조례」는 본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므로 조례시행에는 문제가 없으며,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- 발의자 : 정종기 의원 외 3명
- 수정이유
 - 방재단의 임원(단장, 간사, 대표)들의 임기와 관련하여 임기를 제한 없이 무조건 “연임”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

계속 재임은 3회에 한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함.

○ 수정내용

-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, 간사, 대표의 임기는 “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”를 “3년으로 하되 계속재임은 3회에 한한다.”로 수정함(안 제4조 제5항)

7. 심사결과

○ 수정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4조(임원 및 임무 등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단장, 간사, 대표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되 <u>연임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조(임원 및 임무 등)</p> <p>① ~ ④ (원안과 같음)</p> <p>⑤----- ----- <u>계속재임은 3회에 한한다.</u></p>